#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[의안번호 제212호]

2023년 12월 12일

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23. 11. 14.

나. 대표발의자: 한성환

다. 공동발의자: 김영철, 박기홍, 김상용, 정우식, 최길영, 김시욱, 이상걸, 이상우, 노미경

라. 위원회 회부 : 2023. 11. 14.

마. 위원회 심사 : 2023. 11. 22.

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한성환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의원이 구속, 출석정지 등 징계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(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)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으로부터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.
  - ※ 국민권익위원회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」, 「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」 개선권고사항.

## 나. 주요내용

- 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정수당 지급제한을 추가함(안 제7조제1항)
-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감액 및 지급제한을 신설함(안 제7조제2항)

○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징계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제3항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희숙)

- 본 개정 조례안
- 안 제7조제1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, 여비뿐만 아니라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추가.

#### 의정비 구성[지방자치법 제40조]

- ① 월정수당 :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
- ② 의정활동비 : 의정자료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
- ③ 여비 : 국내외 출장시 지급
- ☞ 월정수당. 의정활동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.
  - 안 제7조제2항은 '출석정지'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,
    - 단서조항, 질서유지 위반으로 '출석정지'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(3개월간) 규정을 신설하였음.
  - 안 제7조제3항은 질서유지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·사과의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규정을 신설하였음.

#### 질서유지 위반(단서 각 호)

- 1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「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」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 지 아니하였을 때
- 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 였을 때
- 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

'출석정지' 징계를 받은 경우

공개회의 '경고 또는 사과' 징계를 받은 경우

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개월간 전액 미지급

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개월간 2분의 1 감액

- 본 개정 조례안은
 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 전액을 감액하고, 본회의·위원회에 일정기간 참석할수 없는 '출석정지'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'경고·사과'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의정비를 감액하는 등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대의기관으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.
-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5. **소수익견** : 없음